부천도시계획시설(역곡하수처리장)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2. 6. 14

나. 제 출 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2. 6. 14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96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(2002. 6. 20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도시과장 권병준)

□ 제안이유

○ 부천시 역곡천 배수구역 및 서울시 오류3배수분구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역곡천으로 방류되어 광명시 목감천 및 안양천을 경유하여 한강으로 방류되고 있으며 당초 하수도정비기본계획(97. 12월)에서는 광명시 하수처리장에서 통합처리키로 하였으나

○ 광명시의 사정으로 광명시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역곡천 수계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부천시에서 자체 처리장을 건설하여 처리토록 여건이 발생되었고 이에 따라 2021년을 최종목표로 역곡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(역곡하수처리장)을 결정코자 함

□ 주요내용

○ 역곡천 수계에서 발생한 하수가 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하천에 유입되고 있어 시민의 보건위생과 자연환경에 위협이 되고 있어 근본적인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시설을 확보하여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,

○ 기술적, 경제적, 사회적, 법적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비교검토하여 본 결과 시설물 배치가 유입시설 및 수처리시설 설치에 무리가 없으며, 유지관리 측면, 장래 시설물 계획을 위한 여유부지 확보 측면, 시공 및 운영관리 측면에서 우수하므로 도시계획시설(역곡하수처리장) 결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□ 관련근거

○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차목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1단계 공사기간은?	○ 2003～2006년까지임
○ 범박동 재개발 지역의 하수시설은 우·오수 분리식인가?	○ 분리식임
○ 구도시 지역은 합류식인가?	○ 중장기 하수도시설 계획에 의하면 2006년까지 분리식으로 시설토록 되어 있음

○ 역곡하수처리장 건설시 수혜지역은?	○ 역곡1, 2, 3동과 괴안동, 범박동, 옥길동, 서울시 일부임
○ 광명시에 광역처리장을 만들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 만드는 이유는?	○ 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던 것이 공약사항을 못 지켜 백지화되는 바람에 우리 시에 건설하게 되었음
○ 우리 시의 예산은 260억원이 소요되는 반면 서울시의 원인자 부담은 26억원으로 불합리하다고 보는데?	○ 우리 시는 약 38,000톤을 처리해야 하는 반면 서울시 항동지역은 약 1,800톤으로 처리량에서 우리 시가 많음
○ 서울시에서 유입되는 양의 처리비용은 받는가?	○ 별도로 받음
○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하였는가?	○ 추후에 할 것임
○ 하수처리장 시설규모는 얼마인가?	○ 1일 75,000톤 처리시설임
○ 광명시 목감천과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 우리 시에 만드는 것 아닌가?	○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자체처리키 위해 건설하는 것임
○ 1일 75,000톤을 처리하는 시설은 규모가 너무 크다고 생각되며,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취지에도 맞지 않음. 기본적으로 2~3만톤 규모로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, 우리 시 마지막 하수처리시설임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재검토하여 시설하기 바람	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반대의견채택

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8. 붙임서류

○ 의견서 1부

부천도시계획시설(역곡하수처리장)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서

의안번호	598	안건명	부천도시계획시설(역곡하수처리장)변경결정안에 대한의견안
제 출 자	부천시장	의 결 연월일	제96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본회의(2002. 6. 21)

부천도시계획시설(역곡하수처리장)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

하수처리장의 1일 처리시설은 보통 2~3만 톤 규모로 시설함이 타당하므로 장기적인 처리의 능력과 가장 효율적인 시설로 설치가 되도록 보다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역곡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은 부당하다는 의견임

2002년 6월 21일

부 천 시 의 회 의 장

부천도시계획시설(역곡하수처리장)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

의안번호	제598호
의결년월일	2002. 6. 21 (제96회)

제출년월일 : 2002. 6. 14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○ 부천시 역곡천 배수구역 및 서울시 오류3배수분구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역곡천으로 방류되어 광명시 목감천 및 안양천을 경유하여 한강으로 방류되고 있으며 당초 하수도정비기본계획(97. 12월)에서는 광명시 하수처리장에서 통합처리키로 하였으나

○ 광명시의 사정으로 광명시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역곡천 수계에서 발생하는 하수를

부천시에서 자체처리장을 건설하여 처리토록 여건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2021년을 최종목표로 역곡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(역곡하수처리장)을 결정코자 함

□ 주요내용

○ 역곡천 수계에서 발생한 하수가 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하천에 유입되고 있어 시민의 보건위생과 자연환경에 위협이 되고 있어 근본적인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시설을 확보하여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,

○ 기술적, 경제적, 사회적, 법적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비교검토하여 본 결과 시설물 배치가 유입시설 및 수처리시설 설치에 무리가 없으며, 유지관리 측면, 장래 시설물 계획을 위한 여유부지 확보 측면, 시공 및 운영관리 측면에서 우수하므로 도시계획시설(하수처리장) 결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□ 관련근거

○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차목

부천도시계획시설(역곡하수처리장)결정(안)

□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(안)

구 분	시 설 명	세부시설명	위 치	면 적(㎡)	비 고
신 설	하 수 도	역곡하수처리장	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456－1번지 일원	52,374	

□ 시설내용

시 설 명	역 곡 하 수 처 리 장	비 고
시 설 규 모	시설 : 75,000톤/일(1단계 : 50,000톤, 2단계 : 25,000톤)	
목 표 수 질	BOD 8PPM 이하, COD 15PPM 이하, SS 8PPM 이하, T－N 15PPM 이하, T－P 1.5PPM 이하, 대장균 군수 1,000개/㎖	

□ 추정 소요사업비 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총사업비	시설비	토지매입비	용역비	감리비	비고
계	113,786	98,600	7,309	2,977	4,900	
1단계(5만톤)	86,536	72,950	7,309	2,977	3,300	
2단계(2.5만톤)	27,250	25,650	－	－	1,600	

□ 재원조달계획 (단위 : 백만원)

재원별	총사업비	2002년	2003~2006년도	2007~2011년도	비 고
계	113,786	5,060	81,476	27,250	
양 여 금	58,928	2,682	41,804	14,442	
도 비	26,129	1,189	18,536	6,404	
시 비	26,129	1,189	18,536	6,404	
원 인 자 (서 울)	2,600		2,600		

□ 토지편입현황

구 분	계	전	답	도로	하천	구거	목장용지
면 적(㎡)	50,837	17,975	30,494	307	32	348	1,681
구성비(%)	100	35.36	60.00	0.60	0.06	0.68	3.31
필 지 수	37	14	18	1	1	1	2

□ 사업시행기간 : 2003~2011년

□ 도시계획 변경결정권자

○ 하수도(하수처리장) : 경기도지사(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)

□ 기대효과

○ 역곡천 수계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정화하여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자연환경 보전

위 치 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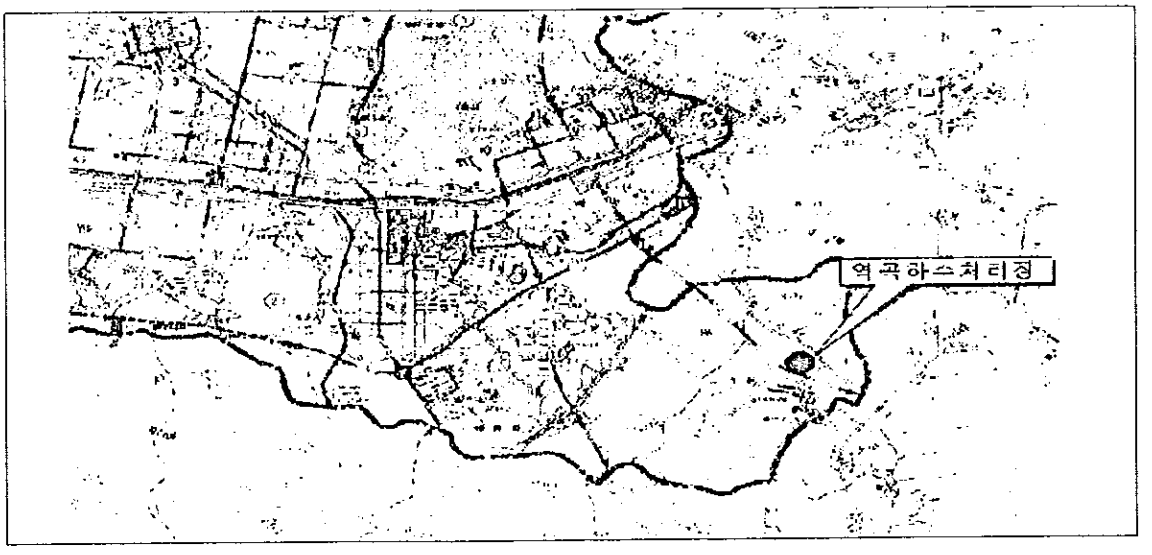

현 황 사 진

□ 역곡하수처리장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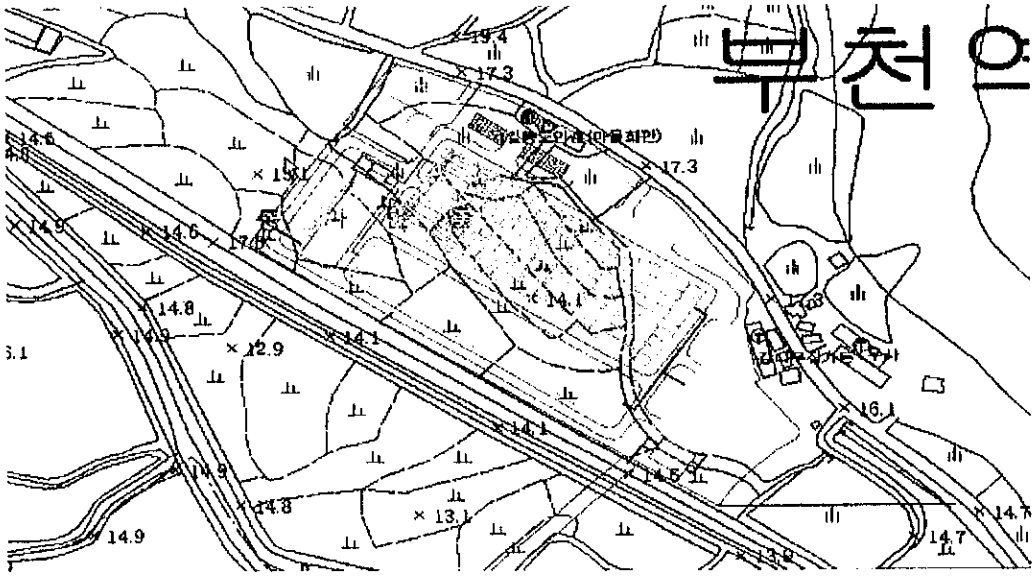
□ 역곡하수처리장 결정도